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등〉
■ 김영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85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위협의회 심의 사항 및 수행 업무 구체화	3
2.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영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9.
3. 회부연월일 : 2025. 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협회의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가 지역 및 직장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 지역 및 직장방위에 관한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방위협회의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 14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위협의회가 지역·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심의 및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생략)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u>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 ----- -----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신설>	③ <u>방위협의회는 지역·직장 방위를 위한 지원사항 등의 심의와 지역·직장 방위에 관한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

현행	개정안
③ (생략)	협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방위협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1. 방위협회의 심의 사항 및 수행 업무 구체화

□ 현행법 상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회의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군법 시행령」 1)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하는 지역방위협회의와 직장 단위로 설치·운영하는 직장방위협회의로 방위협회의를 구분하고 있고 방위협회의 심의 사항 등 기능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방위협회의의 심의 사항 중 지역·직장 방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역·

1) 「예비군법 시행령」 제33조(방위협회의의 종류)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회의(이하 “협회의”라 한다)는 지역방위협회의와 직장방위협회의로 나눈다.

제34조(기능) 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
5.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산업단지 직장방위협회의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협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직장 방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방위협회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직장 방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역·직장 방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 활동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현행법상 「통합방위법」 제7조²⁾에 따라 동법 제5조에 따른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에 「예비군법」상의 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시·군·자치구 이상의 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³⁾ 지역별로 행정·재정적 지원이 다소간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방위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방위협의회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2)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3)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협의회에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 의 처
02)6788-5307